

1863~1866년간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식민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최성운

한국전통의사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의사학 전공

gowa0209@gmail.com

- I. 머리말
 - II. 주요개념 및 기존 연구문헌 분석
 - III. 러시아의 농업이주 관련 시베리아 식민정책(16세기말~19세기말)
 - IV. 연해주에서의 조선인 농업이주 관련 식민정책 수립
 - V. 맺음말
-

I. 머리말

본고는 조선인들의 러시아령 이주가 시작된 초창기인 1863~1866년 사이에 러시아 정부가 조선인들을 연해주로 이주시키고, 이들을 다시 러시아령의 다른 곳으로 재이주시키는 식민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에 수행되었던 대부분의 연구는 1863~1866년간에 진행된 조선인들의 러시아령 이주에 대해 이주를 유발한 핵심적 요인 중 하나인 러시아 정부의 식민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선인이 러시아로 이주하는 역사적 과정의 전반적인 모습을 조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이 논문을 통해 이 연구사상(研究史上)의 공백을 채워 조선인의 러시아령 이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조선인의 이주 및 재이주에 대한 정책은 16세기말 이후 19세기말까지 러시아 정부에서 시베리아를 개척하기 위해 실시했던 식민정책의 맥락 속에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어 고찰된다. 첫째는 프리아무르(연해주, 아무르주, 자바이칼주) 지역에서 러시아 정부의 식민정책이 지닌 거시적 정책적 목표가 무엇이며, 이것이 조선인 식민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다른 이주정책 사례들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밝히는 것이다. 둘째는 1861년 이후 러시아인과 외국인 이주자들을 연해주로 이주시키는 식민정책과 세부적 절차가 기반하고 있는 법률적 토대에 주목하여, 이것이 조선인 식민정책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셋째는 수이푼 관구의 제정으로 귀결되는 조선인에 대한 러시아 식민정책의 형성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하는 시기를 1866년까지로 한정한 것은 수이푼 관구가 1867년 1월부터 도입되어 6월에 조성이 완료되면서¹,

1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러시아와 한국』(동북아역사재단, 2010), 172~173쪽.

1867년부터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러시아의 조선인 식민정책의 주요개념과 기존연구문헌에 대하여 고찰한 뒤, 16세기말~19세기말에 러시아의 농업이주 관련 시베리아 식민정책에 대해 개괄하여 본고에서의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이어서 연해주에서의 조선인 농업이주 관련 식민정책이 시베리아 전체에 대한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음을 밝히면서, 조선인에 대한 식민정책의 개발과정이 연해주의 경제적 개발과 함께 조선인의 러시아화를 목표로 하는 수이푼 관구의 제정으로 이어졌음을 고찰할 것이다. 이것이 개념적으로 조선내의 조선인들을 러시아로 유인하는 이주정책과 러시아 조려 접경지대의 조선인들을 내륙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재이주정책으로 나뉘어 고찰된다.

Ⅱ. 주요개념 및 기존 연구문헌 분석

1. 주요개념

본고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이주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포괄적으로 사용된 ‘이주’에 대해 “이주”와 “재이주”로 개념적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을 “식민정책”으로 규정했다.

조선인의 이주는 개념적으로 조선인들을 연해주로 이주시키는 것을

1766년 8월 13일에 동시베리아 총독 코르사코프(M. C. Корсаков)는 연해주 군무지사에게 1867년 1월 1일부터 수이푼 관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로 수이푼 관구는 1867년 6월에 이르러서야 조성되었다.

“이주”로, 그리고 이미 조선을 떠나 러시아에 도착한 조선인들을 러시아령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재이주”로 나누어 고찰된다. 이채문은 러시아령내의 포시예트만의 티진헤와 같은 곳으로 월경해온 조선인들을 조러 국경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다시 이주시키는 정책에 대해 이것이 단순한 러시아로의 ‘이주’와는 구별되는 ‘재이주’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며, “한인의 재이주정책을 통한 러시아화”에 대해 지적했다. 플로트니코바 마리나는 러시아당국에서 시행한 내륙으로의 이주가 이들을 러시아화하는 동화정책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양자 모두 러시아 정부에서 조선인들의 재이주를 처음 계획하고 시도에 옮기려 했던 시점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다.²

또한 본고에서는 조선인 이주나 재이주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을 “식민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권희영은 러시아가 아무르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우선적으로 착수하는 정책이 식민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관점에서 초창기의 조선인 이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양승조는 러시아 당국에서 새로 합병한 극동지역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러시아화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했다는 관점에서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극동지역 식민정책에 대해 분석하면서, 조선인 이주라는 국한된 관점을 넘어서 존재하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 그 자체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287쪽의 각주 15)에서 “여기에서는 ‘переселение’를, 인구가 적은 국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농민을 이주시키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식민이주’로 표기할 것이다”라고 하여, 러시아 정부에 의해 발생

2 이채문,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역사와 이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9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1999), 136~137쪽; 플로트니코바 마리나, 「1863~1910년까지 연해주로의 한인 이주와 그들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 러시아 국립 역사기록보관소 극동지부 소장 문서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46쪽.

한 러시아 내부에서의 농민 이주가 식민정책에 의한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 조선인 이주 및 재이주에 대한 후속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다.³

필자는 권희영과 양승조의 관점에 동의하며, 양승조의 '식민이주' 개념을 조선인 이주에 대해 적용할 때에는 조선내의 조선인들을 러시아로 이주시키는 "이주"와 이미 러시아 내로 이주한 조선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재이주"로 세분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새로 러시아제국의 구성원으로 등장한 조선인들에 대한 러시아화라는 관점에서 1863~1866년 당시 러시아 정부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식민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 접근한다.

2. 기존 연구문헌 분석

본절에서는 기존의 연구문헌을 조선인 이주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영향력, 그리고 조선인의 이주와 재이주라는 세 범주로 나누어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개괄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고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1) 조선인 이주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문헌

1863~1866년간에 진행된 조선인의 러시아 이주에 대해 연구한 기존의 문헌 중 이주를 유발한 핵심적 요인 중 하나로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

3 조선인 이주나 재이주에 대해 식민정책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는 권희영, 「한민족의 노령이주사 연구(1863-1917)」, 『국사관논총』 제41집(1993), 158~160쪽, 164~168쪽; 양승조,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의 극동 지역 식민정책: 유즈노 우수리 지역 식민이주 정책을 중심으로」, 『사총』 제87호(2016), 287쪽, 313쪽.

방침을 거론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그 정치적 방침이 식민정책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지는 않았다.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 방침이 이주를 유발한 핵심적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은 이채문에게서 보인다. 그는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를 유발한 원인에 대해 1869~1870년의 대홍작, 삼정의 문란, 관료들의 민중수탈, 노동력 유입국의 이주노동자와 노동력 유출국의 친척들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연결망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 방침이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이채문은 “한인에 의한 러시아 극동지역이주는 러시아측이 갖 편입시킨 극동지역의 경영을 위한 것이라는 정치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면서 “러시아측의 정치적 방침이 초기 러시아 이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했다.⁴ 그러나 이채문은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민정책을 통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이주정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 방침이 일반적으로 법령을 매개로 하여 구현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선인에 대한 식민정책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귀결점인 수이푼 관구의 제정에 대해 규명하면서, 조선인에 대하여 이주정책 관련 법령을 적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고찰하고, 그 적용여부에 반영된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 방침을 드러내려고 했다.

2) 조선인의 이주에 대한 연구문헌

본고의 분석기간인 1863~1866년 사이에, 그리고 더 나아가 조선인의 러시아이주 기간 전체에 걸쳐,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조선인들을 러시아로

4 이채문,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이주와 만주이주의 비교: 이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0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2000), 99~102쪽.

유인하여 이주시켰다는 주장은 존재하나 러시아 정부에서 조선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에 대한 분석은 잘 보이지 않는다. 당시 청과 조선에서는 이를 러시아에서 조선인들을 유인한 결과로 보았고⁵, 일부 한국학자들 역시 러시아 정부에서 조선인 이민을 보조했거나 조선농민들을 유혹했다고 주장했다.⁶

이에 반해 썬비르제바 따찌아나는 러시아 정부가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정부에서 이주에 개입했다는 설을 비판하면서, 그녀는 “단지 다른 나라로부터의 이민도 막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의하면, 1861년에 제정되어 러시아인과 다른 민족들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아무르주와 연해주의 러시아인 및 이민족들의 이주에 관한 법(Правила для поселения русских и иностранцев в Амурской и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ях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이하 “법”)으로 간칭)에 따라 “자비로 이주한 사람들은 일시적 또는 영구 소유형태로 [...] 토지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점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혜택을

5 『籌辦夷務始末』 卷47, 二十八葉(後面); 承文院(저), 배우성 외 4인(역), 『國譯 同文彙考 犯越史料4』(동북아역사재단, 2012), 388~389쪽, 502쪽. 『籌辦夷務始末』에 의하면 1865년에 청에서는 조선인들의 러시아 이주가 러시아 정부에서 유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 동일한 견해는 청에 의해 1867년에도 표출되는데 조선으로의 외교 문서를 통해 공유되어 『同文彙考』에 수록되었다. 최성운, 「조선말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를 유인하는 소문과 월경에서 드러나는 조선인들의 사회적 연대 연구: 1864~1877년까지를 중심으로」, 『장서각』 제45집(2021), 392~393쪽.

6 Lee, Yur-bok, *West Goes East: Paul Georg von Möllendorff and Great Power Imperialism in Late Yi Korea*(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p. 107; Kim, Key-Hiuk, *Opening of Korea: A Confucian Response to the Western Impact*, (Seoul: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1999), p. 14; Chien, F., *The Opening of Korea: A Study of Chinese Diplomacy, 1876-1885*(Hamden, Connecticut: Shoe String Press, 1967), p.56. 이상은 썬비르제바 따찌아나, 「1869~1870년간에 진행된 러시아와 조선간의 경흥협상과 그 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2권(2002), 13쪽 및 주20)과 주21)에서 재인용.

알게 된 조선인들이 러시아로 넘어오게 되었을 따름이며⁷, 러시아 정부에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주장에 대해 본고에서는 먼저 1861년 「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에 대한 그녀의 해석이 실제적인 「법」의 내용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밝힐 것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조선인들을 물질적으로 유인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러시아령으로 이주시에 주어지는 혜택이 「법」과 일치하는데 불과한지 혹은 「법」과는 별도로이면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 존재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 조선인의 재이주에 대한 연구문헌

러시아령으로 들어온 조선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재이주정책에 대해 보리스 박과 니콜라이 부가이 및 반병률⁸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이들은 1865년에 연해주지방정부에서 러시아 영내의 조선인을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시키는 지시공문을 내렸으며, 조선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이푼⁸ 관구 제정 1년 뒤인 1868년부터 실제로 조선인의 재이주가 시작되어 1870년과 1871년까지 시행되었음을 밝혔다.⁹ 그러나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식민정

7 씬비르제바 따찌야나, 앞의 논문(2002), 13~14쪽. 논문에는 해당 법률이 “흑룡강과 연해주로 이주하는 러시아 민족과 다른 민족을 위한 장정”으로 번역되어 있다.

8 수이푼은 중국지명인 綏芬의 발음인 “쑤이푼(Suifen)”에서 온 것이고, 綏芬河와 그것이 지나는 수이푼 분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통칭하였으며, 조선인들은 수이푼을 秋豊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수이푼과 綏芬 및 秋豊은 동일한 명칭이다.

9 보리스 박, 『러시아 제국의 한인들(극동기)』(청주대학교 출판부, 2002), 47~49쪽, 53쪽, 58쪽, 70~76쪽, 79~86쪽;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재러한인 이주사』(시대정신, 2004), 172~175쪽. 재이주정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연구는 반병률에 의해 수행되었다. 반병률, 「러시아원동지역 초기 한인마을 형성과 러시아의 정책에 대한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제40집(2011), 294~296쪽;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한인마을 연추의 형성과 초기 모습」, 『동북아역사논총』 제25호(2009), 47쪽. 이외에 박노자도 1867년에 월경한 500여 명의 조선인들이 재이주한 결과 1869년에 수이푼 지역에서 조선인 마을을 개척했다는 사실을 기술

책이 연해주의 경제적 개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지니고 있고, 이주정책과 재이주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정책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그리고 1865년 1/4분기에 이미 동시베리아 지방정부차원에서 조려 국경지역 러시아영내의 조선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시키는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1865년에 러시아 정부에서 기획했던 재이주계획의 상당부분이 1867년 수이푼 관구 제정으로 계승되었으며 수이푼 관구가 조선인들의 재이주를 그 핵심적 사업 중 하나로 삼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사상의 공백은 본고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Ⅲ. 러시아의 농업이주 관련 시베리아 식민정책 (16세기말~19세기말)

1. 16세기말~19세기 초반

러시아가 시베리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16세기 말부터 19세기말까지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 주둔 관리 및 군대에 대한 식량을 시베리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농민이주 정책을 시행했다. 이와 같은 방법 중 하나가 시베리아로의 이주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시베리아로 이주 및 정착과정에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국유지에 정착시켜 농사를 짓게 만드는 정책이었다.

1646년에 토볼스크 총독이 모든 유랑민을 등록하고 국유지에 정착시킬

했다. 박노자, 「19世紀後半 韓人の 露領 移民의 初期 段階」, 『전주사학』 제6권(1998), 173쪽.

것을 지시하자 지역내 유랑민들이 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해버린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황제는 ‘앞으로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경작지에 정착시키지 말라’는 칙령을 내려 의지에 반하는 강제적 이주를 금지시켰다. 이와 같이 강제적 이주 및 정착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이에 대한 황제의 금지칙령까지 내려지자, 유랑민과 농노의 자의에 의한 이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막대한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시베리아 식민정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인자로 재인식되었다.

식민정책은 농민들을 모집하는 지역당국에서 해당지역으로 이주희망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공하는 물질적 혜택의 수준에 대한 결정과 혜택에 대한 선전 및 실제 이주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지원자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적 혜택의 수준에 대한 결정 및 이에 대한 선전활동은 시베리아 식민정책에 있어서 농민이주계획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에 해당된다.

먼저 러시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민정책의 혜택 수준은 이주계획이 세워진 시베리아의 특정지역으로 지원자를 끌어들이기에 매력적이라고 판단될 정도의 경제적 이득에 맞춰 결정되었다. 각 지방당국은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춰 상환의무가 없는 현금 혹은 다양한 현물, 일정 기간 후에 상환해야만 하는 현물의 대출금 및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이주비 등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해당지역으로 모집되는 최초의 인원은 비교적 한정된 숫자로 제한했다. 최초로 특정지역으로 이주할 대상의 수를 제한하는 대신 충분히 매력적인 물질적 혜택을 보장했던 것은 막대한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되는 식민계획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이주를 일종의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차후의 홍보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일단 대상으로 선정된 그 지역에 이주지원정책이 시행되기만 하면 그 성과가 홍보되면서 이후에 그곳으로 광범위한 이주희

망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었다. 따라서 유랑민의 시베리아 국유지 정착을 위해 각종 물질적 혜택으로 유인하는 정책에서, 그 정착지원 혜택의 수준은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거나 아예 혜택 자체가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정 시베리아 지역으로의 이주 및 정착지원계획이 수립되면 모집하는 도시의 관리나 이주예정지인 시베리아에서 파견된 대리인들이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베리아의 국유지로 이주하고자 하는 농민이나 유랑민들을 모집했다. 이주시에 주어지는 혜택과 해당지역에서 저야할 국가에 대한 의무를 포고관리(биричь)가 시장에서 며칠간 외치며 선전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칙서를 모스크바 당국에서 시베리아 여러 지역의 총독들에게 17세기 내내 내려 보냈다. 시장에서 포고관리가 외친 이주정책은 이것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 소문으로 전파되며 선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

러시아 정부가 16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개발해 왔던 시베리아 식민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식민정책에서 반복된다. 본고에서 분석할 1865년부터 조선인들을 유인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물질적 특혜에 대해 고민하는 러시아 관리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소문을 통한 식민정책에 대한 선전은 1862년 체르카프스키 대위가 퍼트린 1861년 「법」에 대한 소문에서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장거리 이주에 소요되는 이주비는 1868년에 러시아 정부가 증기선에 명령을 내려 재이주를 희망한 조선인들을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라즈돌노예까지 운송했던 사례를 들 수 있다.¹¹

10 이상에서 서술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상철, 「러시아 정부와 시베리아 농민이주: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서양사연구』 제50집(2013), 181~184쪽.

11 *Труды Приамурскаго отдѣла Императорскаго русска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аго общест ва. 1895 г.*(Хабаровскъ: Типографія Шгаба войск, 1896), С. 12.

2. 1843년 시베리아 국가소유 이주지의 정비에 관한 법

16세기말부터 각각의 지역별로 진행되며 정책적 경험을 누적해오던 시베리아로의 식민정책은 1843년에 시베리아 국가소유 이주지의 정비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정비되어 시베리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통합적으로 시행된다. 이주 희망자는 소속 공동체와 행정부서의 승낙을 받은 뒤에 시베리아 토지측량부가 미리 설정한 이주지구에 한해 이주가 허가되었다. 이들이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양식과 의료혜택이 제공되었고, 국가소유 이주지에 도착한 러시아 농민은 해당지역의 국가농민으로 귀속되었으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국유지의 공여 외에도 농기구와 소 두 마리, 가옥건축용 목재가 무상으로 지급되었고, 자금과 종자는 대부되었으며, 이주지 정착 후 일정 기간 동안 조세와 부역에 관한 의무가 면제되었다.¹² 그리고 이 정책이 러시아 국가농민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 예상보다 많은 수의 농민들이 이주하게 되자, 1856년에 이르러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주사업을 중단시키게 되었다.¹³

1843년의 시베리아 국가소유 이주지의 정비에 관한 법의 지원사항은 1866~1867년에 조선인들에게 연해주 이주를 유인하기 위해 퍼트렸던 소문

12 시베리아 국가소유 이주지의 정비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이철, 『시베리아 개발사』(民音社, 1990), 101쪽.

13 이상의 내용은 양승조, 앞의 논문, 287~288쪽. 참고로 양승조는 1822년과 1843년에 제정된 법령을 통해 국가농민의 시베리아 이주가 허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1861년 농노해방령 이전의 농민은 “국유지에 거주하며 국가에 대해 납세와 봉건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농민, “황실령 토지에 거주하며 국가와 황실에 대해 납세와 봉건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황실농민, 그리고 “귀족들의 사유영지에 거주하며 국가와 영주에 대해 납세와 봉건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영지농노의 세 부류로 분류된다. 양승조, 위의 논문, 287쪽과 주17)에서 인용. 그리고 영지농노가 1861년에 농노해방령으로, 황실농민은 1863년에, 마지막으로 국가농민이 1866년에 해방되었다. R. D. 차크스, 『러시아史』(역민사, 1991), 267쪽.

에서 토지와 농우(農牛), 종자 및 주택건축용 건축자재를 제공한다는 것과 유사하다.¹⁴ 당시 조선인에게는 자금의 대부와 조세 및 부역의 면제가 주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¹⁵, 이것과 소문에 나오는 특혜를 합친다면 1843년 법의 특혜와 일치한다. 또한 1843년 법의 특혜는 제공된 가축의 값을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1870년·1871년 재이주정책의 특혜와 매우 유사하다. 이것은 1871년 아무르주로 재이주된 조선인들이 받았던 특혜에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자재 제공을 제외한다며 1870년 푸틸롭카 개척 조선인들이 받았던 특혜와 항목상 대략적으로 일치한다.¹⁶

3. 「아무르주와 연해주의 러시아인 및 이민족들의 이주에 관한 법」과 1861~1865년까지의 러시아 식민정책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를 획득하게 되자, 러시아 정부는 프리아무르에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지배권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다시 이주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에 강력한 방어 요새를 구축하는 군사적 임무를 가장 우선시하였고, 이와 함께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구성원들의 공동체를 정착시켜서 이 지역을 ‘러시아

14 承文院(저), 배우성 외 4인(역), 「同治 6년 6월 1일 原奏」, 앞의 책, 397쪽, 515쪽.

15 1869년의 대규모 월경사태 당시에 조선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연해주로 가면 땅을 주고, 현금을 대출해주며, 세금까지 면제해준다’는 소문을 들었던 사실을 상기했다.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 저, 구양근 역,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烏刺細庶斯杜屈見聞雜誌)」, 『한일관계사연구』 제9집(1998), 254~255쪽. 그러나 실제로 이 현금대출과 세금면제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참고로 “雜誌”는 “잡지”라고 읽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역자인 구양근이 「烏刺細庶斯杜屈見聞雜誌」에 대해 붙인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라는 한글제목을 그대로 인용한다.

16 보리스 박, 앞의 책, 75쪽, 82쪽;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앞의 책, 43쪽.

화'함을 통해 새로 얻은 영토에 대한 지배를 공고하게 하려 했다. 이는 지역 토착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경제·사회적으로 자생력을 지닌 러시아인과 카자크인 공동체를 러시아군 주둔지의 후방에 정착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러시아군대를 위한 군량생산을 담당하게 하는 정책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했다.¹⁷

본격적인 프리아무르 지역의 식민지개발을 위해 1861년에 「아무르주와 연해주에 러시아인 및 이민족들의 이주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본절에서는 먼저 이와 같이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 안에서 진행되는 이주관련정책의 특징과 이 「법」을 통해 드러나는 정책적 목표를 고찰한 뒤, 세부적 절차와 규정 및 이와 연관되어 실제로 발생했던 이주상황 및 추진되던 이주정책에 대해 고찰한다.

186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이주관련정책의 제반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된 기반 위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 특징은 법률과 명령 및 정부 회람문(Циркуляр)을 통해서 입법내용이 대중에게 명시되고, 이주와 관련된 절차가 법령에 의거해 체계적으로 구성되며,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토지에 대한 권리부여와 세부적인 특혜 및 의무까지 명확한 형태로 규정된다는 점이다.¹⁸ 이것은 아무르주와 연해주에 존재하는 이주에 대해 연구할 때, 러시아 정부의 식민정책과 이주관련 법령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우선 1861년 「법」은 그 적용대상에 대해 '자비로 이주 및 정착을 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아무르주와 연해주 토지를

17 이병조, 「러시아 프리아무르 한인사회와 정교회 선교활동(1865-1916)」,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64쪽; 양승조, 앞의 논문, 278~279쪽, 288~289쪽.

18 Редчун, В. М., "К вопросу Об Особенности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ека: Правовой Аспект," *Культура И Наук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 22, № 2, 2017, С. 85~86.

할당함에 있어서 러시아인과 외국인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 외국인들의 이주를 유도했는데, 국적과 무관하게 이주희망자들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이주 즉 이동 및 정착과정을 “재무성의 재정적 지출 없이 자비로” 진행해야 했던 것이다.¹⁹

이 규정은 1858년 12월 8일에 승인되었던 국가농민을 아무르주로 이동 및 정착시키는 법령과 여러 측면에서 대비된다. 아무르주로의 식민을 위해 국유재산성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이듬해인 1859년부터 러시아 중앙과 우랄지방의 국가농민들을 아무르주로 이주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착 후 2년간의 식량과 이들에게 종자, 가축과 농기구 구입 용도의 현금 및 대출을 제공했다.²⁰ 이것은 1843년 시베리아 국가소유 이주지의 정비에 관한 법에서 이동 중인 이주여행자에게 양식과 의료혜택을 정착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특혜를 제공했던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1858년 당시에는 농노제의 존재로 인해 아무르주로 이주가 가능한 대상이 국가농민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에서 아무르주의 개발을 위해 기존의 시베리아 개척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이동 및 정착과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며 유인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61년 농노해방으로 인해 막대한 수의 영지농노가 아무르주 및 연해주로 이주할 수 있는 후보군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1858년 법령에서 이동 및 정착에 대해 지원하던 특혜에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요구되었는데, 농노해방으로 인해 이런 특혜 없이도 쉽게 이주자원자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러시아정부가 1861년 「법」의 적용대상을 자비로 이주 및 정착하는 자로

19 Зуева, Н. С., “Переселен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период столыпинских реформ,” кандидат наук(2016), С. 34. 해당 인용문이 포함된 조항 전체는 “Переселение это совершается желающими на собственный их счет, без всякого денежного пособия со стороны казны.”

20 Редчун, В. М., *Op cit.*(2017), С. 85; Зуева, Н. С., *ibid.*, С. 38~39.

제한한 것이었다.

또한 이 「법」은 러시아 정부가 이주자에게 아무르주와 연해주 전지역 중 우수리강과 해안 사이의 지대를 우선적으로 할당할 것을 명시하여²¹, 이곳이 러시아 정부가 「법」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러시아인과 외국인을 식민하고 싶었던 지역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 정부가 식민정책을 수립할 때 특정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드러내는 방식은 1866년을 비롯해 이후로도 반복되며 나타난다.

이 「법」에 의한 이주정책의 구체적인 절차 또한 법적 토대 위에서 진행된다. 러시아 정부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농민들에게 토지를 할당할 지역들을 매년 지정한 뒤 명령을 통해 공포(公布)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접수한 이주희망자 혹은 그들이 선출한 대표²²가 해당지역을 조사한 뒤 자신이 원하는 정착지를 선택하고 당국에 해당 토지에 대한 청원을 제기하여 그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유럽러시아 농민들에게 토지의 부족이 심각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넓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권리까지 함께 부여하는

-
- 21 이 법의 제9조는 러시아 정부가 우선적으로 “우수리강과 해안 사이만이 아니라 우수리강의 꼭대기부터 해안가까지의 토지(земли по морскому берегу от вершин р. Усури, а также между р. Усури и морским берегом)”를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Зуева, Н. С., *ibid.*, С. 36. 1972년까지 우수리강은 상류의 지류인 올라헤(Улахэ)강이 다우비헤(Даубіхе)강과 합류한 이후부터 비로소 ‘우수리강’이라고 불렸다. 따라서 이 법이 “우수리강의 꼭대기”라고 기술한 내용은 강의 발원지가 위치한 곳부터 당시 다우비헤강까지의 우수리강 상류지역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다.
- 22 선출한 대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토지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Зуева, Н. С., *ibid.*, С. 36. 이 부분은 이어서 언급할 아무르주의 사례에서와 같이 당시 러시아에서 통용되던 방식이 관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북캅카스 식민정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Байтуевич, З. Р., “Колонизационно-переселен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ека: политическ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кандидат наук(2019), С. 126.

것은 훌륭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²³ 이때 먼저 신청하는 자에게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비롯한 각종 특혜가 인정되었기 때문에²⁴, 해당 내용의 공포부터 청원에 이르기까지 만민에게 공평한 기회부여 및 투명한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러시아인 및 외국인 이주민 모두에게 인두세의 영구면제와 10년간의 병역면제가 주어졌다.

이 중 러시아 및 시베리아 내지로부터의 이주자들은 국유재산성과 이주하고자 하는 주의 정부에 청원을 하여 발부받은 재이주권리에 대한 법적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해서 법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미 개간된 도시지역 혹은 이주민들에게 할당된 개간되지 않은 국유지 구역 중에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고, 후자를 선택한 이들에게는 토지의 공여·20년간의 토지세 면제·3년간의 부역면제가 주어지게 되었다.²⁵

국가의 보조 없이 자비로 이주한 러시아인의 첫 번째 아무르주 개척은 1861년 아무르주 푸딘(Фудин) 정착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듬해인 1862년에 이들은 “대리인(ходо́к)”을 보내 아무르강 하류지역에서 농사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들을 찾아냈고, 1863년에 이곳에 새로운 마을을 세워 정착했다. 이어서 1864년과 1865년에도 역시 아무르강 하류지역에 새로운 마을들을 세웠다.²⁶ 「법」은 대리인을 보내 할당된 구역을 조사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사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이 대리인을 활용하는 방법은 1861년 체코인 이주계획을 비롯해 이후의 여러 이주정책 시행과정이나 이주정책계획에 등장한다.

23 Редчун, В. М., *Op cit.*,(2017), С. 86.

24 이상의 전반적인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Зуева, Н. С., *Op cit.*(2016), С. 35~36.

25 「법」에 대한 내용은 Зуева, Н. С., *Op cit.*(2016), С. 35~36; Осипов, Ю. Н., *Крестьяне-старожил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1855-1917 гг. Монография*(Владивосток: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ательство ВГУЭС, 2006), С. 42; Редчун, В. М., *Op cit.*,(2017), С. 86.

26 Осипов, Ю. Н., *Op cit.*(2016), С. 44~45.

외국인 이주민의 경우, 러시아 정부는 슬라브족을 주요한 이주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1861년에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인과 마찬가지로 슬라브족에 속하는 체코인 이민자들을 연해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기려 했다. 미국에서의 생활조건에 대해 불만스러워 했던 체코인 이민자들을 연해주로 이주시키기 위해, 러시아 당국은 미국에서 발간되는 체코어 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투고했다. 아무르주 자연의 풍요로움에 대한 묘사와 함께 '러시아 정부에서 체코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에게 남부해안에서 땅을 고를 권리를 줄 것이며, 정착초기에 도와줄 것이고, 그들의 관습에 따라 촌락 행정체계를 조직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투고문을 접한 상당한 수의 미국내 체코인들이 워싱턴의 러시아 대사관에 이주에 대한 청원을 했다. 또한 청원자들은 체코어 신문의 발행인 두 명을 대표자(депутат)로 뽑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냈고, 체코인들의 대표자는 러시아 관리 말리노프스키(Малиновский)와 함께 자신들에게 정착지로 주어질 지역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특히 우수리만(Уссурийский залив)²⁷을 선호하였고, 대표자로서 다음과 같은 청원을 제기했다. 그 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여비를 지출하여 (체코의) 식민지들을 샌프란시스코로부터 남쪽항구(южные гавани)²⁸까지 데려오고, 첫해에 도착한 체코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정착한다 등등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들이 행정적 자치를 넘어서 러시아당국의 불간섭 및 독자적인 민형사재판소까지 요구하자 1864년에 이들의 청원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고 만다.²⁹

27 우수리만은 블라디보스토크가 위치해 있는 연해주 포트르대제만 북부 해안에 있는 만이다.

28 남쪽항구는 우수리만의 남쪽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9 Буссе, Ф. Ф., *Переселение крестьян морем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в 1883-1893 годах*(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Общественная Польза, 1896), С. 23.

법리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체코인들은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체코어 신문에 공고한 내용에 정착초기에 러시아 정부의 보조가 주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예에 해당되는 내용인 러시아정부가 여비를 지출한다는 요구조건이 체코인 대표자가 제기한 청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비에 의한 이주라는 「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할당될 토지에 대해 공표하고, 지정된 지역 내에서 토지선택의 자유를 주며, 지역을 선택한 뒤 청원을 제기하는 등 그 절차가 「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심지어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러시아 농민들이 이주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대표자 혹은 대리인을 파견하여 토지를 조사하는 방법'까지 유사하다.

「법」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하게 체코인 이주민에게 100데샤티나라는 광활한 토지를 제공했고 여러 병역 및 세금 등을 면제시켜 주려 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체코인들의 연해주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국유지를 제공하려 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즉 엄밀한 법적 기준을 적용할 때 러시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착하는 외국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식민정책은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활용하며 준비되었다. 이를 통해 1861년 「법」이 당시 식민정책과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구분되어 있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 후술할 1866년의 특별법과 1865년에 연해주 군무지사가 조선인을 국가농민으로 귀속시키며 1861년 「법」을 적용시키려 했던 사례들을 통해, 체코인들에게도 1861년 「법」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체코인 이주 사례는 특히 외국인과 관련된 아무르주와 연해주로의 식민 정책에 있어서 1861년 「법」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보여준다. 「법」은 러시아 정부의 식민정책 그 자체와 동일시될 수 없고, 식민정책의

시행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었다. 「법」이 농민의 이주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사안인 토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법적 토대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의 이주를 위해 「법」을 활용하여 「법」이 제공하는 수준의 특혜만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러시아 정부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민족집단이 존재하고, 이들의 연해주 이주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법」 이상의 특혜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이들에게 「법」과 함께 혹은 「법」과는 별도의 식민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었다. 이 점은 1866년에 남우수리 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³⁰

체코인 이주계획에 등장하는 이주의 절차 및 특혜의 내용은 1867~1869년간 러시아 정부가 실행한 첫 번째 조선인 재이주정책과 여러 모로 유사성을 보인다. 체코인의 ‘대표자’와 유사하게 연해주를 조사하는 인물이 나타났고, 조선인에게도 촌락자치가 허용되었으며, 이들의 이주과정에서 소요되

30 체코인에게 시행하려 했던 별도의 식민정책이 「법」의 혜택을 배제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866년의 특별법의 사례를 통해 별도의 식민정책이 「법」의 혜택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1866년의 특별법은 주로 1861년 이후에 우수리 지방에 정착한 러시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다시 남우수리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다. 1866년의 특별법이 이주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므로, 남우수리 지역으로의 이주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1861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후술할 내용과 같이, 1866년의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주자들은 1866년의 특별법의 추가적인 혜택과 더불어 1861년 「법」에 의한 혜택도 함께 제공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체코인의 이주정책에 있어서도, 비록 ‘특별법’ 형태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1861년 「법」에 의한 혜택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러시아 당국에서 판단할 때 1861년 「법」의 혜택은 별도의 추가적 재정지출이 필요 없이 서류작업으로 제공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며, 이것이 제공되는 것이 제공되지 않는 것보다 이주 희망자를 유치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는 여행경비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했고, 조선인들이 토지할당을 위해 러시아 당국에 청원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로 인해 1867~1869년의 조선인 수이푼 재이주가 러시아 식민정책의 결과인지 그리고 1861년 이후 러시아인 프리아무르주 이주 및 1861년 체코인 재이주계획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1866년의 특별법과 남우수리 지역 이주

러시아 정부의 식민계획에 있어서 1861년 「법」과 다른 새로운 정책적 목표가 1866년에 설정되었다. 1866년에 연해주의 가장 남쪽 지역인 남우수리 지역으로의 러시아인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Особые правила)이 제정된 것이다. 이 특별법은 정착장소 선택에 있어서의 완전한 자유와 첫 수확할 때까지 군인배급량에 준하는 식량지원 및 가구당 100루블의 현금대출이라는 추가적 특혜를 제공했다. 그 결과 1866~1869년에 이주한 1,573명 중 87.1%인 1,371명의 러시아인이 아무르주로부터 이주하였고³¹, 수이푼강 유역의 니콜스코예(Никольское)와 라즈돌노예(Раздольное),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 트로이츠크예(Троицкое) 등이 특별법으로 인해 1866년에 건설된 러시아인 마을이다.³²

1866년 특별법의 특혜 중에 농지 개척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공여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으로부터 이 특별법의 특혜가 1861년 「법」의 혜택과 함께 주어지는 추가적인 것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또한 1861년 「법」의 혜택을 받아 아무르주에 정착했던 러시아인들이 다시 1866년 특별법의 특혜를

31 Редчун, В. М., *Op cit.*(2017), С. 87; 양승조, 앞의 논문, 295~296쪽.

32 Осипов, Ю. Н., *Op. cit.*(2006), С. 46.

받기 위해 남우수리 지역으로 이주한 것은 1866년 특별법이 1861년 「법」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1866년 특별법과 1861년 「법」은 함께 적용되었던 것이다.

1866년 특별법의 제정은 러시아 정부가 1861년의 「법」에서 주된 이주지역으로 목표했던 우수리 지역보다 더 남쪽 지역을 우선적 정착지역으로 설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남우수리 지역은 1863년 이후 조선이주민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던 곳이었다. 그리고 1866년의 특별법에서야 처음으로 '정착장소 선택에 있어서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점은 그 이전까지의 이주가 1861년 체코인의 사례에서와 같이 러시아 정부에서 할당한 지역 내에서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 특별법 혜택의 수혜를 바라면서 1866년에 개척된 러시아인 마을들은 1867~1869년간 러시아 정부가 실행한 첫 번째 조선인 재이주정책과 1869~1870년에 시행한 두 번째 조선인 재이주정책에서 조선인들의 정착지 중 일부로 활용되었다.³³

1861년부터 1866년까지 식민정책의 목표가 점차 남쪽을 겨냥하며, 러시아인 혹은 러시아인이 아니라면 같은 슬라브인에 속하는 체코인을 남우수리 지역으로 이주 혹은 재이주시키는 방향으로 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농민들을 정착시켜 군량을 생산해내기 위해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여 농민의 이주를 유도하는 제도 위에서, 이주민을 유인하는 대표적 수단인 물질적 혜택은 그간 시베리아 병합과정에서 개발되어왔던 농민이주 관련 식민정책과 사례들을 참조하여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되며 시행되었다.³⁴ 물질적인 특혜 외에도 외국인들을

33 Вагин, В. И., "Корейцы на Амуръ," *Сборникъ историко-статистическихъ свѣдѣній о Сибирѣ и сопредѣльныхъ ей странахъ*, Т. 1(Спб: Русская скоропечатня, 1875), С. 3, С. 7; *Труды Приамурскаго отдѣла Императорскаго русска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аго общества. 1895 г., Op cit.*(1896), С. 12.

34 만약 이주지역이나 이주방법에 대한 거부감이 심할 경우에는 이 정도의 일반적

불러들이기 위해 외국인들의 촌락자치 등의 다양한 유인책이 함께 고려되었다.

IV. 연해주에서의 조선인 농업이주 관련 식민정책 수립

1. 조선인 이주를 위한 러시아 정부의 식민정책의 개발과정

프리아무르주 식민정책의 전략적 목표인 '새로 얻은 영토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해당지역을 러시아화하여 후방을 안정시키면서 군량을 생산하는 것'은 조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본절에서는 이와 같은 러시아 정부의 목표가 조선인의 이주와 재이주에 대해 어떤 식으로 관철되었는가에 대해 기존의 시베리아 식민정책들 및 러시아 정부가 프리아무르로의 식민을 위해 제정했던 여러 법령과 이주계획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1) 1864년 11월, 동시베리아 총독의 조선인 식량지원 승인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연해주에서 계절경작을 하던 조선인들은 1862년에 노브고로드 초소를 지휘하던 체르카프스키 대위로부터 「법」에 대해 전해 들었다.³⁵ 그리고 1863년 겨울 조선인들의 첫 연해주 이주가 노브고로드 초소의 책임자인 러시아 위관급 장교들과 연해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조선인들 간에 벌어진 상호 탐색과 교섭의 과정 속에 시작되었고, 이 상황은

수준보다 아주 과격적으로 높은 혜택을 제공하여 지원자들을 모집했다.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양승조, 앞의 논문, 294~295쪽, 300~302쪽.

35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앞의 책, 164쪽.

1864년 가을까지 지속되었다. 조선인들은 티진헤에 자신들이 지어놓은 초가집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면서 조선인 마을에 러시아군이 주둔하여 만주족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와 같이 안전이 보장 되면 앞으로 100여 가구가 더 이주해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르카프스키의 후임인 레자노프 중위는 1864년 4월에 연해주 군무지사로부터 승인이 내려지기 전에 독자적 결정을 내려 이들의 입주를 허가했다. 또한 초소를 조선인 마을에 세워 러시아군인을 파견했으며, 종자 및 첫 수확까지 버틸 식량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주 조선인들에게 중대와와의 협상을 통해 중대 병참부의 밀가루를 연대보증으로 임대해주었다. 조선인들이 근면하게 농사를 지어 곡물을 수확하자, 9월에 레자노프는 연해주 군무지사에게 이들이 근면하게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보고하면서 수확된 곡물을 국고로 매입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여 조선인들의 연해주 정착을 지원했다.

한편 초소 책임자 레자노프 중위와는 별도로, 동시베리아 지방당국은 같은 해 5월에 러시아군 총참모본부 동시베리아군참모부 정보장교인 겔베르센 이등대위를 그리고 연해주 지방당국은 9월에 올덴부르크 중령을 파견하여 러시아령의 조선인들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했다. 이들 역시 레자노프와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이 농업생산면에서 그리고 노동력 공급면에서 연해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올덴부르크 중령은 보고서의 말미에 조선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해 와도 그들을 위해 추가로 지출할 부분이 없다는 점을 첨언”하면서 “혹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첫 수확 때까지의 식량으로 훈춘시 접경지역의 만주인들로부터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부다 비용을 대출해주는 정도면” 되고, “또한 조선인들이 호밀, 보보리, 귀리 등을 파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에게 첫 번째 종자는 무료로 지급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기술했다.³⁶

1864년 11월에 동시베리아 총독은 조선인이 이주 첫해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서, 연해주 군무지사에게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정착하는 초기에 국고 비축분에서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배급하여 이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황제에게 올리는 「1864년 동시베리아 행정에 대한 상주보고」에서 조선인들이 이미 정착 첫해에 식량자급에 성공하여 보조금 지급이 없이도 겨울을 날 수 있고, 100여 가구가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연해주의 식량자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이주가 러시아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기술했다.³⁷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조선인 이주의 첫 해 정착상황에 대해 동시베리아 당국은 조선인들이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체적인 식량자급에 성공한 근면한 농사꾼이며, 앞으로 100여 가구가 이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연해주의 식량자급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즉 식민정책의 성공을 관가름하는 관건적 사항인 인력의 모집과 이를 위한 특혜의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기존 예산한도 내에서 정착초기에 식량을 제공하는 정도만으로도 100여 가구의 추가적인 인력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1864년 11월 이전까지는 러시아 당국에서 새로 연해주로 이주해온 조선인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주로 했던 시기이며, 위관급 초소책임자 개인 차원에서의 상황판단에 따른 지원이 존재했을 뿐 러시아 정부 차원의 개입이나 지원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1월에 동시베

36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저), 한희정(역), 「96. <연해주에 배치된 동시베리아 국경경비대대 검열관의 보고서>」, 『러시아문서 번역집 XVII-러시아국립 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ДВ)』(선인, 2014), 223쪽.

37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앞의 책, 31쪽.

리아 총독이 연해주 군무지사에게 조선인들을 보호하고 비축분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식량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그 동안 행해졌던 말단 장교의 개인 차원에서 판단과 지원에 대해 동시베리아 당국 차원에서 사후승인한 첫 번째 정책적 결정이다. 11월 이후 말단 장교의 개인 차원을 넘어서는 동시베리아 당국 차원의 지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식량지원 결정 하나가 존재한다고 해서, 러시아 정부에서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에 대한 식민정책을 수립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2) 1865년 1월 연해주 군무지사의 첫 번째 조선인 식민정책 계획안³⁸

조선인들이 1864년 가을에 거둔 수확을 통해 조선인들에 의해 연해주에서의 식량자급자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해주 개발에 있어서 이들이 지닌 경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가운데, 당시 청의 정부가 조선정부에 월경조선인을 조선으로 쇠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1865년 1월에 연해주 군무지사는 조선인에 대한 첫 식민정책을 계획하여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제의했다. 그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조선인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월경조선인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①)한 뒤 ‘국가농민³⁹으로 귀속시킬 것’(②)과 이들에게 ‘1861년 「법」을 적용할 것’(③),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과 청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조선인들을

38 본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앞의 책, 177~178쪽.

39 여기서 언급된 국가농민의 경우, 연해주 군무지사가 월경조선인을 국가농민으로 귀속시킬 것을 건의했던 1865년 1월이라는 시점에서 당시 러시아 농민의 두 가지 법적 존재형태 중 하나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이미 해방된 농민이다. 이미 영지 농노와 황실농민이 각각 1861년과 1863년에 해방되어 자유를 획득했지만, 1866년 이 되어야 해방되는 국가농민은 아직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농민은 1822년과 1843년의 법령을 통해 시베리아 이주가 허용되었으며 1861년의 「법」에서도 국유재산성과 이주하고자 하는 주의 정부의 승인 아래 이주할 수 있었다.

보호할 것'④을 건의했다.

조선인들을 '국가농민으로 귀속시킬 것'②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시베리아 국가소유 이주지의 정비에 관한 법(1843년)이나 국가농민을 아무르주로 이주 및 정착시키는 법(1858년)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두 경우 모두 자원하는 농민들이 러시아 당국에서 미리 정착예정지역으로 설정한 지구로 이주하며 이주경비 및 정착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국유지에 정착하는 농민은 국가농민이 되었다. 후술할 1864년 5월 겔메르센의 조선인 이주계획 제안보고서에서 조선인을 국가농민으로 만드는 이 방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너무 막대한 재정지출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었던 것을 볼 때⁴⁰, 연해주 군무지사의 계획은 위의 두 사례와 같이 1861년 「법」에는 포함되지 않는 여러 물질적 혜택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연해주 군무지사가 조선인들에게 국가농민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 대한 국고에서의 지원과 함께, 자비에 의한 이주자들에게 적용된 1861년 「법」을 동시에 적용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시베리아 총독은 연해주 군무지사의 제안에 대해 이를 조선인에 대한 조선과 청이 러시아 영내의 조선인을 쇄환하려는 사안·러시아 국적 부여 사안·조선인의 국가농민 귀속 사안·1861년 「법」의 적용여부의 개별적 사안으로 나누어 파악하는데, 마지막 두 사안은 조선인의 이주에 대한 지원 사안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는 이 세부적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답변을 한다.

동시베리아 총독은 조선인들을 국가농민에 등록시키는 것②을 거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1864년 4월에 연해주 군무지사가 레자노프

40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앞의 책, 169쪽.

중위에게 하달했던 지시공문을 지침으로 삼을 것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공문을 하달했는데, 이 공문에는 연해주 군무지사의 제안 중 ①과 ④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⁴¹

- 1) 러시아와 조선은 러시아 영토 내로 이주한 조선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체결한 조약이 없다. 단, 러시아 법에 따라 우리는 러시아 국민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막을 수 없다.
- 2) 러시아 국경 내로 이주한 모든 조선인들은 러시아 법이 규정하는 완전한 자유를 영위하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①에 대해 동시베리아 총독은 조-러 간에 정치 및 외교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은 조-러 간에 정치 및 외교적 관계를 맺지도 않았고 월경(越境) 조선인에 대해 체결한 조약도 없으므로, 러시아로 월경한 조선인들은 러시아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은 1864년의 지침공문의 “러시아 영토에 이주한 조선인들”이 “완전한 자유인이자 법의 보호를 받는 이들이라는 것”과 일치한다.⁴² 연해주 군무지사가 언급한 ‘조선과 청에서 러시아 영내의 조선인들을 쇄환하려는 시도’에 대해, 동시베리아 총독은 그것이 러시아 주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어서 ④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러시아 영내의 조선인은 러시아 법이 규정하는 자유를 영위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며, 만약 청국 관원의 압박이 조선인에게 가해지는 경우 무력까지 사용하여 저지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1864년 지시공문에서 러시아 영내의 조선인들이 “청국인이 아니기

41 공문의 인용은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앞의 책, 35쪽.

42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앞의 책, 166쪽.

때문에 청국 관원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음도 명심해야 한다”⁴³라고 규정
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청의 관리들의 주권침해가 존재할 시에 이에
대한 무력행사까지 허용한다는 점을 추가한 내용이다.

①과 ④와 관련된 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동시베리아 총독이 만약
‘청과 조선에서 월경조선인들을 조선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저지하는
것’(④)이 연해주 군무지사가 제안한 계획의 목표라면, 이것의 달성은 연해
주 군무지사가 1864년에 작성했던 기존공문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만으로
도 충분하다고 결론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연해주 군무지사의
주장과는 달리 ①과 ②가 ④를 위한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조항을 통해 연해주 군무지사가 제안한 ‘조선인들에 대한
러시아 국적 부여’(①)의 경우, 동시베리아 총독 역시 ‘러시아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것은 맥락상 개별적으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려는 조선인에게
국적을 부여할 수 있지만, 연해주 군무지사의 계획과 같이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조선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테면 일괄적으로 국적을 부여
하는 것 등에는 반대하는 의미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동시베리아 총독은 조선인의 연해주 정착을 지원하는 사안
에 대해, 1861년 「법」을 적용하여 국유지와 각종 세금과 의무에 대한 면제특
권을 부여하는 ③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았고, ②와 연관되어 국가농민에
게 지원하는 국유지의 공여나 이주경비 및 정착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또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신 월경조선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허가했는데 이것은 1864년 11월에 그가 연해주

43 위의 책, 166쪽.

군무지사에게 내린 지시를 반복한 것이다.⁴⁴

결과적으로 동시베리아 총독은 연해주 군무지사의 제안 중 ‘조선인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함’^①에 대해서만 긍정했을 뿐이며, 국가농민 귀속안^②이나 「법」의 적용^③에 대해 거부했다. 그는 러시아 영내의 조선인을 청과 조선의 관리로부터 보호하며 이들의 귀환을 저지하는 문제^④는 ①~③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러시아 영내의 조선인에 대한 지원도 「법」 등과 별도로 동시베리아 총독의 지시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한 이주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1865년부터 조선인의 이주에 대해 주어지는 지원이 모든 민족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법」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지방 당국의 고위관리가 내린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분명해지는 것이다.⁴⁵

또한 동시베리아 총독이 국가농민 귀속안^②이나 「법」의 적용^③에 대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의 정착을 위한 물품 제공을 언급할 뿐 정작 조선인 농부들이 그 물품들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토지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볼 때 단순히 해당내용의 누락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한 침묵은 조선인 재이주에 대한 동시베리아 총독의 정책적 의도를 반영하고

44 위의 책, 177~178쪽.

45 심사위원 한 분은 필자의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 국가주도 이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 당국자의 자율적 정책 집행을 허용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비록 연해주 군무지사가 ①~③을 한데 묶어 논리적 선후관계로 연결한 제안을 했지만, ③「법」의 적용은 ①과 ②를 그 전제조건으로 가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이런 조건들과 무관하게 ‘자비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있다. 그가 연해주 군무지사의 제안 중 세부적 사안인 ①~③에 대해 검토하면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②와 ③을 거부했을 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선인의 정착을 위한 토지의 제공 및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후술할 1865년 5월의 조선인 재이주계획 제안보고서에서 겔메르센이 조선인에 대해 「법」 제8조를 적용하여 100데 샤틀리의 국유지를 공여하자고 주장했던 것도, 연해주를 포함한 시베리아의 개발에서 이주민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유인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865년부터 비록 조선인이 스스로 개간하여 경작하는 토지일지라도 이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상황은 조선인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 1893년 이전까지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동시베리아 총독이 조선인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이 정책적 결정이 1893년까지 계승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조선인 이주에 대한 명확한 식민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조선인들이 연해주에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1862년부터의 믿음 및 1864년 러시아의 사법제도 개혁 이후 연해주 러시아 정부가 규정으로 제정하여 선전해왔던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와는 괴리되는 현실이다. 1864년에 연해주 군무지사는 “러시아 영토로 이주한 모든 한인인 러시아 법의 보호와 완전한 자유를 향유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을 제정했고, 유진롤은 「개탄론」에서 1864년부터 “극진히 생명재산을 보호 해야 주며”라는 소문이 유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나세킨(H. A. Насекин)은 1865년부터 조선인들 사이에 ‘조선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이

존재했었다고 기록했다.⁴⁶ 따라서 조선인들의 믿음 혹은 러시아 정부가 유포해왔던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는 조선인의 토지소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 당국은 자신들이 조선인들을 재이주시키려는 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에게만 토지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을 이에 대한 첫 번째 해결방식으로 선택했다. 1867년 12월에 월경해온 경흥부의 조선인 중 1868년에 수이푼강 유역으로 재이주하고자 했던 자원자들에게만 토지의 소유권을 부여했던 것이다.⁴⁷

3) 1865년 1/4분기 연해주 군무지사의 첫 번째 조선인 재이주계획안

이미 1864년의 추수를 통해 월경조선인들이 농업분야에 있어서 지니는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1865년부터 조선인들의 활용을 통한 연해주 전역의 개발과 월경조선인들의 러시아화라는 두 목표를 합치시키는 것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식민정책에 있어서 관건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조려 국경 인접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이들을 점차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시켜 러시아인들 사이에 소규모로 분산시키는 재이주정책이었다.

조선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한 이듬해인 1865년 1/4분기에 월경조선인들에 대한 첫 번째 재이주정책이 수립되었다. 카자케비치(П. В. Казакевич) 연해주 군무지사가 노브고로드 초소대장에게 하달했던 지시공문을 통해 파악되는 재이주계획의 목적은 해당지역의 농업발전, 주둔군의 식품조달,

46 보리스 박, 앞의 책, 55쪽, 58쪽; 유진률, 광무 2년 10월 15일, 「개탄론」, 『독립신문』, 2쪽; Насекин, Н. А., “Корейцы Приамурского края: Крат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Журнал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Часть CCCLII*, №3, 1904, С. 7.

47 *Труды Приамурскаго отдѣла Императорскаго русска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аго общества. 1895 г., Op cit.*(1896), С. 12.

사료공급, 값싼 공장노동력의 확보, 러시아 농민과 카자크의 농지개간 및 이용에 필요한 소작인과 머슴의 수요충족 등이었다.

카자케비치가 수립한 재이주계획을 분석해보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조선인들에게 조려 국경과 블라디보스토크 초소 구간 도로를 따라 가능한 한 국경에서 더 먼 곳에 정착하도록 설득하되 장소 선택의 자유를 주며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는 단계이다. 둘째는 러시아 정부에서는 티진헤강 분지부터 수찬강의 분지까지를 조선인 거주지역의 경계선으로 삼고, 블라디보스토크 항과 나훗카만 사이의 내륙지대를 우선적 정착지로 삼는 초기 단계이다. 셋째는 조선인들을 포시에트 부근으로부터 수이푼강 분지를 따라 깊숙이 들어간 내륙에 정착시키는 최종단계이다. 이어서 그는 4월 한 달 동안 티진헤의 조선인들을 배에 태워 수찬지역으로 재이주시키라고 지시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는 않았다.⁴⁸

48 이상의 내용은 보리쓰 박, 앞의 책, 46~49쪽; 씬비르췌바 따찌야나, 「19세기 후반 조려간 국교수립과정과 그 성격: 러시아의 조선침략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7), 33~34쪽. 이 두 서적 모두에서 연해주 군무지사가 노브고로드스키 초소 지휘관에게 내린 지시의 작성시기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의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 이것이 1865년 4월 이전에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카자케비치의 조선인 재이주계획에서 조선인들의 우선적인 거주지로 지정된 곳이 티진헤와 수찬지역이다. 이 중 티진헤는 1863년의 첫 번째 월경조선인들이 개척하여 세운 지역이므로, 티진헤를 제외한다면 수찬지역이 조선인들의 첫 번째 재이주지역이 된다. 그리고 <총참모본부 겔메르센 대위의 1865년도 포시에트항 출장 보고서>에서는 연해주 군무지사가 1865년 4월 한 달 동안 조선인들을 배에 태워 수찬지역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카자케비치의 이주계획에는 나훗카가 언급되어 있는데, 겔메르센 역시 이곳의 초소를 언급하고 있다.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지), 한희정(역), 「99. <총참모본부 겔메르센 대위의 1865년도 포시에트항 출장보고서>」, 앞의 책, 230쪽. 따라서 겔메르센이 언급한 연해주 군무지사의 지시는 수찬이 첫 번째 재이주 대상지역이라는 점에서 연해주 군무지사의 조선인 재이주계획과 일치한다. 결국 4월 한 달 동안 재이주시키라는 명령은 그것이 4월 이전에 내려진 것을 의미하므로, 연해주 군무지사의 조선인 재이주계획은 1865년 4월 이전의 1/4분기에 수립되었다.

연해주 군무지사가 4월 한 달 동안 조선인들을 수찬지역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은 계획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카자케비치의 조선인 재이주 계획에 대해 비판하면서 겔메르센이 유형자로 구성된 수찬의 거주자와 나훗카만의 군기지를 함께 거론했는데⁴⁹, 1864년에 하사관과 사병이 주둔하는 군사기지가 나훗카만에 건설된 뒤 사할린의 유형자들이 이곳으로 보내져 일부는 군사기지 인근에 나머지는 나훗카만으로 흘러드는 수찬강을 따라 하구에서 12km 지점에 정착했다.⁵⁰ 수찬은 1865년 당시에 남우수리 지방에서 러시아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유일한 곳으로, 카자케비치가 조선인들을 러시아화시키기 위해 재이주시킬 장소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했다.

그런데 계획에서는 수찬으로의 이주에 대해 첫째 단계처럼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정착지 선택의 자유를 주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띠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군소장인 카자케비치가 지시를 내리고 지신허를 떠난 뒤에야 해당지시를 알게 된 이등대위 겔메르센이 자신이 받았던 훈령은 “최대한 순차적인 이주를 지시하고 있다”면서 급작스러운 이주 지시가 훈령에 어긋남을 완곡하게 드러냈다. 이어서 여러 모로 부적절한 장소인 수찬 대신 “조선인들이 [...] 자진해서 정주하게 될” 다른 지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점에서⁵¹, 겔메르센과 조선인이 해당 지시를 강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카자케비치의

49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저), 한희정(역), 앞의 글, 231쪽.

50 Бендюк, Е. Э., КАК ЗАСЕЛЯЛАСЬ ПОБЕРЕЖЬЕ БУХТЫ НАХОДКА(<http://na-khodka-lib.ru/%D0%BA%D0%B0%D0%BA-%D0%B7%D0%B0%D1%81%D0%B5%D0%BB%D1%8F%D0%BB%D0%BE%D1%81%D1%8C-%D0%BF%D0%BED0%B1%D0%B5%D1%80%D0%B5%D0%B6%D1%8C%D0%B5-%D0%B1%D1%83%D1%85%D1%82%D1%8B-%D0%BD%D0%B0%D1%85%D0%BE%D0%B4/>), 검색일: 2022년 3월 12일).

51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저), 한희정(역), 앞의 글, 227~231쪽. 밑줄과 강조는 필자.

지시는 시행되지 않는데, 강제성을 띠고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수찬 이주에 대한 카자케비치의 지시가 당시 동시베리아 당국에서도 식민이주정책의 원칙이었던 '자유의회에 의한 이주' 및 기존에 내려졌던 훈령에서 지시하는 "최대한 순차적인 이주"와 모순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둘째 단계는 사실상 강제이주이며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던 첫째 단계와 대비된다. 그에게 있어서 조선인 재이주정책의 첫째 단계는 4월부터 시작되는 둘째 단계에 의해 대체되어 사라질 한시적 상황에 불과했던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861년의 「법」과 1866년의 특별법에 러시아인의 정착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지역이 존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카자케비치의 1865년 재이주계획에도 우선적인 정착지역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1861년과 1866년의 러시아인 거주지가 내륙과 해안지역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조선인의 재이주대상지역에는 해안지역 거주를 금지하고 내륙지역만 거주지로 선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제한 조항이 존재한다. 이것은 같은 외국인이지만 슬라브족인 체코인이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안가 거주를 승인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카자케비치의 실제적인 재이주계획인 둘째와 셋째 단계에서 수찬과 티진헤를 비롯해 거론된 모든 재이주지역이 조선과의 직접적 해상교류가 힘든 내륙지역이고, 조선과 가장 가까운 조-러 국경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국경인근지역 전체가 조선인들의 재이주예상지역에서 배제되어 이들의 거주가 허락되지 않았으며, 이미 조선인 마을이 건립되어 있고 조선인 재이주의 출발지 역할을 담당하는 티진헤 인근지역만 그 예외로 인정받았다. 또한 가장 멀리 떨어졌으며 내륙 깊숙이 자리한 수찬강 분지 내륙 및 수찬 인근 지역에서 수찬보다는 좀 더 조-러 국경에 가까운 나훗카만 내륙지역으로 가장 먼저 조선인 재이주 명령이 내려졌으며, 계획상으로는 나훗카만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내륙지역이 둘째 단계의 정착지로

지목되었다는 사실 역시 단순히 재이주의 목적이 연해주 전지역의 개발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수찬지역에 먼저 군기지가 건설된 뒤 러시아농민이 이주해 마을을 건설한 것은 새로 획득한 영토에 대해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고 그 배후지에 러시아농민을 식민함으로써 군량을 생산하며 해당지역을 러시아화하는 프리아무르주 식민정책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진행된 식민사업이다. 카자케비치가 이곳에 조선인을 재이주시키려 했던 것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러시아화를 기획한 것이다.⁵²

마지막으로 카자케비치가 의지에 반하는 이주를 금지한 황제의 칙령에 위배되는 수찬으로의 강제이주정책을 시행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추정해보면, 이것은 그가 1865년 1월에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제안했던 조선인 국가농민 귀속 및 1861년 「법」 적용 계획이 무산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주장했던 대로 조선인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고 국가농민으로 만든 뒤 1861년 「법」을 적용했었다면, 시베리아의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국가농민에게 주어지는 이주경비 및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한 막대한 지원 및 1861년 「법」에서 주어지는 광대한 농토와 각종 특혜가 조선인들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이 경우 1870년에 조선인을 수이푼 지구로 강제 재이주시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이 반발하는 대신 오히려 주어지는 막대한 특혜로 인해 수찬으로의 이주를 반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52 이상근은 1865년에 작성된 연해주 군무지사의 명령서에 대해 “러시아 초소가 없는 국경지대에 이들을 정착시켜 국경관리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하여 오히려 정반대의 해석을 가하고 있다. 이상근, 「韓人 露領移住史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4), 60~61쪽. 이것은 당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 정부의 식민정책이 연해주 개발과 조선인들에 대한 러시아화라는 두 측면을 달성하는 목표 속에서 세워졌음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베리아 총독이 그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수찬 이주를 물질적으로 유인할 수단 없이 재이주정책을 시행하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강제'성을 띠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1865년 5월 켈메르센의 조선인 재이주계획 제안보고서

1864년에 이어 1865년에도 켈메르센 이등대위가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 실태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포시예트항으로 파견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프리아무르주 식민정책의 전략적 목표인 러시아화와 군량 생산이 화두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때 기존에 러시아 정부에서 시베리아의 농민이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시켰던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바로 조선인 이주자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로 매력적인 물질적 혜택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켈메르센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식민정책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은 그가 포시예트 현지에서 경험한 내용 외에도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둔 채 제기된 것이다. 하나는 동시베리아 당국 차원에서 논의되며 진행되고 있던 포괄적인 남우수리 식민정책 및 이와 관련되어 이미 동시베리아 당국에서 내린 순차적 이주에 대한 훈령이다. 다른 하나는 연해주 군무지사가 1865년 1월에 제안했던 조선인 국가농민 귀속을 비롯한 첫 번째 조선인 식민정책계획안과 1865년 1/4분기 연해주 군무지사의 첫 번째 조선인 재이주계획안이다.

그는 월경조선인들이 연해주 주둔 러시아군의 군용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법」 제8조에 따라 이들에게 1가구당 100테샤티나의 토지사용을 허가할 것을 제안했다.⁵³ 이것은 조선인에게 「법」의 적용을

53 이것이 조선인에게 「법」의 특혜 중 토지 사용만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의 특혜 중 토지를 공여받은 자에게 같이 주어지는 20년간의 토지세

주장했던 연해주 군무지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당시 조선인 농민의 유인을 위한 러시아의 식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민하던 러시아 당국자들 사이에 토지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적 인식이 존재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는 조선인들에 대해 토지 이외의 다른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예를 들면 카자케비치가 1864년 10월에 조선인들에게 부족한 식량을 제공하라고 한 것과 11월에 동시베리아 총독이 이에 대해 승인한 것에 대해, 그는 “조속한 정착을 돕는 이러한 조치는 지금 필요하지 않”다면서, 무상원조가 조선인들의 자립적 경제활동 의지를 망칠 것이며, “조선인들은 지나치게 많은 수가 유입되지만 않는다면, 외부의 도움 없이도 능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조선인들을 국가농민으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연해주 군무지사의 1865년 1월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그 이유로 이들에게 군징집이나 부역 같은 납세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조선인이나 러시아 정부 양자 모두에게 무리라는 점을 들었다. 그가 조선인들을 국가농민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또 다른 이유는 조선인 이주자들처럼 소규모 집단에 지출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재정지출이 소요된다는 점이었다.⁵⁴ ‘소규모 집단’이라는 것은 1863년 11월 30일자 레자노프 중위의 보고서에서 앞으로 조선인 100여 가구가 추가적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사실과 연관된

면제와 3년간의 부역면제까지 포함한 것인지, 그도 아니면 토지 제공을 비롯한 「법」의 모든 특혜를 다 적용할 것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54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앞의 책, 167~170쪽. 1864년 5월에 작성된 겔메르센의 보고서 중 군량생산 및 러시아화와 관련 내용은 169쪽에 인용되어 있다. “물론 조선인들을 통해 가장 먼저 기대되는 효과는 이들에 의한 **균용 식량 공급**이다. 이들은 낮은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조선인 이주민들을 활용하여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조선인 이주민들이 이미 마련한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이 지역으로의 러시아인들의 이주를 촉진시킬 수 있다.**” 강조와 밑줄은 필자.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막대한 재정지출'은 이미 '1865년 1월 연해주 군무지사의 첫 번째 조선인 식민정책 계획안'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이 국가농민 귀속안이 1843년이나 1858년 법령에서의 특혜와 같은 모종의 물질적 특혜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지출로 추정된다.

러시아정부의 시베리아 식민정책에서는 최초로 제공되는 특혜가 해당 개척지로 농민을 유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맞춰져 제공되었다가, 이 특혜를 수여받은 이주농민의 소문에 의해 그곳으로의 이주지원자가 증가하면 점차 감소하다가 결국 폐지되는 절차를 밟았었다. 그런데 1861년 「법」에 따라 물질적 특혜가 없이 토지제공과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서도 안전만 확보되면 100여 가구가 더 이주해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굳이 「법」 이외의 물질적 특혜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가 설사 혜택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더라도 이에 대한 소문의 파급효과로 추가적인 인원의 이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 추가적으로 이주해올 조선인 이주예정자가 총 100여 가구 정도로 예상될 따름인 상황에서 이 정도 결과를 내기 위해 재정지출을 할 필요는 더욱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겔메르센은 조선인 이주자원자를 모집하기 위한 혜택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다른 물질적 특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1864년 9월에 동시베리아 국경경비대대 검열관의 보고서와 11월에 동시베리아 총독이 황제에게 올리는 「1864년 동시베리아 행정에 대한 상주보고」에서 동일하게 강조했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둘의 공통점은 보조금 등 조선인을 유인하기 위해 제공되는 물질적 특혜에 대해 '추가적인 예산지출이 불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자비로 연해주로 이주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굳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물질적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식민정책 수립에 있어서 물질적 특혜의 제공 등 재정적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3인의 정책적 판단은 1868~1869년에 수이푼 관구로 첫 조선인 재이주정책이 시행될 때 반영된다.

군량생산을 비롯한 연해주의 경제적 개발을 위해 조선인에게 「법」에 따라 토지를 제공하는 수준이 적절하다는 내용을 제외한다면, 조선인들의 러시아화에 대한 우려 섞인 상황인식이 보고서 전체를 관통한다. 겔메르센은 조선인들을 국가농민으로 등록하자는 연해주 군무지사의 제안에 대해 러시아화가 되지 않은 조선인들을 국가농민으로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었다. 이를 통해 그가 속한 러시아군의 정보계통에서 이 개별사안을 넘어서서 동시베리아 전역에서의 식민정책의 전략적 목표라는 관점에서 이민족들의 러시아화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였던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1864년에 자신이 처음으로 연해주에 정착했던 조선인 집단을 관찰했을 때, 이들이 러시아어와 러시아 관습을 따라 배우려는 의지를 보였고 정교로 개종하는 등 빠르게 러시아화되고 있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이주 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러시아인과의 접촉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1년 전과는 달리 1865년에 2차적으로 이주해온 집단 중 다수의 조선인들이 전혀 러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을 체감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1년 만에 연해주의 조선인들 사이에서 러시아화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관찰된 사실을 토대로 하여, 그는 이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향후 러시아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의 조선인 이주 추세로 본다면 장차 조선인들이 조려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인들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점유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데다가, 현재 월경조선인들이 조선과 가까운 곳에 조선인 마을을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모여살기 때문에 러시아와는 단절된 생활양식을 유지하게 되며, 또한 혈족관계와

교역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두만강 너머의 조선과 접촉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당시 프리아무르 지역에서의 최우선적 과제였던 군사적 측면에서 이를 총괄하여

“연안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점들 주위에 내부의 적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영향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⁵⁵

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조선인들이

“변강에 러시아인들이 정착하는데 성공하기 전에 변강을 확고하게 장악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

이라며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865년 카자케비치 연해주 군무지사 겸 해군소장이 4월 한 달간 조선인들을 수찬으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본 지시는 제게 하달된 훈령들과 상충”된다면서, 자신이 받은 훈령들에서는 “최대한 순차적인 이주를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1865년 상반기부터 조선인들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재이주시킨다는 내용이 이미 동시베리아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또한 켈메르센이 수찬 재이주를 비판했던 이유와 그가 조선인 재이주 지역으로 수찬 대신 추천한 명구가이와 수이푼의 상황을 살펴보면, 러시아 정부가 아무르주와 연해주의 러시아화를 위해 앞으로 몇 년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체적 이주의 큰 틀을 짜놓고 접근한다는 점을 확인할

55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저), 한희정(역), 앞의 글, 229쪽. 이탤릭체는 원문.

수 있다. 카자케비치의 조선인 재이주정책 세 번째 단계에서 재이주 지역으로 지목한 ‘포시에트 부근으로부터 수이푼강 분지’까지의 지대가 겔메르센의 조선인 재이주 대상지역과 유사하다는 사실 역시 이 점을 지지한다.

겔메르센이 조선인 수찬 재이주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이유 중 하나는 조선인 재이주정책의 목표가 러시아화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수찬이 조선인 재이주지역으로 부적절한 이유가 수찬 거주 러시아인들 “대다수는 유형자로 음주와 태만이 특징”이기 때문에 “전혀 모범을 보일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는 수찬 분지 인근의 나훗카 항 또한 소초에 근무하는 인원이 하사관 4명뿐으로, “조선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거리가 멀고 규모가 작”다는 사실을 지적했다.⁵⁶

조선인 재이주정책은 조선인들이 반러시아적인 세력으로 전화하지 못하도록 조려 국경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연해주 내륙으로 분산이주시키는 목표와 이들이 러시아인 마을 사이에서 러시아화되는 목표 모두를 달성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겔메르센의 판단에 의하면 당시 조선인들의 러시아화를 추동해내기에 적절한 “모범”적인 러시아인 마을이 연해주에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조선인들을 내륙으로 재이주시키더라도 이들의 러시아화를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러시아화와 관련되어 겔메르센의 보고서는 조선인 재이주가 조선인의 러시아화를 위한 조건이 갖춰진 미래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데, 이것은 그가 받았던 훈령에서 “최대한 순차적인 이주를 지시”했던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겔메르센이 조선인들의 재이주장소로 거론한 명구가이와 수이푼의 상황은 앞으로 1~2년이 지나야 조선인이 재이주할

56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저), 한희정(역), 앞의 글, 231쪽. 기지근무병력이 하사관 4명이라는 겔메르센의 기록은 “У самого Тихого: история открытия и освоения бухты Находка”에서 하사관 1명과 사병 4명이라는 내용과 충돌한다.

만한 조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1865년 당시 그가 조선인 러시아화에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던 수찬지역에는 러시아 농민이 거주하는 마을이 존재했지만, 수이푼과 명구가이에는 러시아 민간인 마을은 말할 것도 없고 군기지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1866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에 수이푼강 유역에 니콜스코예(Никольское)와 라즈돌노예(Раздольное) 등의 러시아 민간인 마을이 군사기지와 함께 건설되었다. 명구가이에는 1867년에 군사기지가 설립된 뒤, 1884년에 러시아인 마을이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⁵⁷ 그는 1~2년 뒤에 설립될 군기지나 민간인 마을 예정지를 조선인 재이주 예상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겔메르센이 조선인 재이주 문제에 대해 러시아화라는 관점에서 아무르주와 연해주를 아우르는 동시베리아 정부 차원의 식민정책 속에서 사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견해대로 수이푼지역에 주로 아무르주로부터의 이주민에 의해 러시아인 마을이 건설된 뒤인 1867~1869년에 걸쳐 조선인의 재이주가 진행된다.

5) 1866년 수이푼 관구 제정 명령

1863년 조선인의 첫 연해주 이주 이후, 동시베리아 정부 산하의 여러

57 바라바시(Барабаш)는 명구가이강 유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곳에 군사주둔지가 건설된 것에 대해서는 От Або до Ясной Поляны по карт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Часть 1(<http://toponimika.ru/index.php?id=157>, 검색일: 2022년 3월 11일). 이 내용은 Рублёва, О.Л., *От Або до Ясной Поляны по карт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школьный топоним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во ПИППКРО, 2010)의 내용을 전산화한 것이다. 명구가이강 유역의 민간인 마을에 대해서는 Барбенко, Я. А., “Крестьянское расселение в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часть рус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Приамурья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2010), С. 125의 표 “Таблица 2.7. Количество семей-основателей крестьянских селений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в период 80-х годов XIX в.” 참조.

러시아 관원들이 계획해왔던 식민정책은 수이푼 관구 제정으로 귀결된다. 1866년 8월 13일에 동시베리아 총독 코르사코프가 내린 수이푼 관구 설립 명령을 통해 1867년 1월 1일부터 남우수리 지방에 사실상 조선인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여 이들의 이주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이푼 관구에 대한 관리규정이 도입되었고, 1867년 6월에 그 조성이 완료되었다.⁵⁸

1865년 연해주 군무지사의 계획과 수이푼 관구의 관할구역이 일치하며, 조선인들의 재이주계획 역시 양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카자케비치의 1865년 1/4분기 조선인 관리정책과 1867년의 수이푼 관구제정은 연속성을 지닌다.⁵⁹ 그리고 카자케비치가 수찬을, 겔메르센이 수이푼과 명구가이를 조선인 재이주지역으로 지목했던 것과 같이, 이미 러시아 군사 기지와 러시아인 마을 건설이 완료된 수이푼 지역으로 조선인을 재이주시키는 것 역시 프리아무르주 식민정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가 새로 획득한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러시아 농민을 이주시켜 군량생산을 꾀하면서 동시에 배후지를 러시아화한 뒤 이곳으로 조선인을 분산이주시켜 이들의 러시아화를 꾀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겔메르센이 러시아에 동화된 조선인들 중에서 조선인을 관리하는 행정 담당자를 선출하고 행정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던 내용도 채택되어, 조선인 마을에서 주민들이 조선인 마을 대표를 선출하고 그가 자치적

58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앞의 책, 172~173쪽; 보리쓰 박, 앞의 책, 49쪽; 이병조, 앞의 논문, 68쪽.

59 1866년부터 1867년까지 수이푼 관구에 수찬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67년에 아스콜드(Аскольд) 섬에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문과 함께 1868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중국인(манзы, 蛮子)의 군사적 충돌, 일명 만쯔 전쟁(Манзовская война)의 결과 우수리 지역은 수이푼, 수찬, 한카, 우수리 등 여러 관구(округо в)로 나뉘게 되었다. Барбенко, Я. А., *Op cit.*(2010), С. 98.

행정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⁶⁰ 이 외에도 그가 수찬보다 수이푼 지역을 우선적인 조선인 재이주지역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던 내용도 1867~1869년과 1870년의 수이푼 재이주정책을 통해 구현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회에 의한 이주'라는 수백 년간 시베리아 식민이주정책의 원칙은 1867~1869년의 조선인 수이푼 재이주정책과 1869년의 한카호 재이주정책에서도 계승되었다.⁶¹ 카자케비치의 수찬 재이주계획이 강제적이었던 데 반해 겔메르센은 조선인들이 "자진해서 정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자유의회에 의한 이주'의 입장이 1867~1869년의 조선인 수이푼 재이주정책과 1869년의 한카호 재이주정책에 관철된 것이다. 이를 통해 수이푼 관구의 조선인 재이주정책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재이주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것은 동시베리아 총독이 1865년 1월에 연해주 군무지사가 제안했던 조선인의 국가농민 귀속과 1861년 「법」의 적용을 거부하면서 조선인들의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과 결합되어 고찰될 것이다.

V. 맺음말

본고는 1863~1866년간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식민정책 형성과정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연구이다. 1863년에 조선인들이 처음으로

60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앞의 책, 174~175쪽, 170쪽; 보리쓰 박, 앞의 책, 49쪽.

61 *Труды Приамурского отдѣла Императорскаго русска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аго общества. 1895 г., Op cit.*(1896), C. 12; 보리쓰 박, 앞의 책, 58~59쪽.

연해주로 이주한 뒤, 러시아 정부는 1865년부터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식민정책을 시행하여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에 개입했다. 러시아 정부는 1863년에 연해주로 처음 이주한 조선인들이 이 해 가을에 거둔 수확을 보고서 이들의 노동력이 연해주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곧바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민정책수립에 착수했다.

1864년 11월에 동시베리아 당국 차원에서 러시아령의 조선인에 대해 월경조선인에게 정착시에 필요한 식량을 지급하라는 총독의 첫 지시가 내려졌다. 그리고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첫 식민정책 수립은 1865년 1월에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제출된 연해주 군무지사의 계획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청과 조선정부가 연해주의 월경조선인을 조선으로 쇠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연해주 군무지사가 조선인을 국가농민으로 만들고 이들에게 「법」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동시베리아 총독이 양자 모두를 거부하면서 국가농민 등록이나 「법」에 의거한 혜택 대신 월경조선인에게 필요한 물품만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다시 한 번 내렸고, 조선인들을 토지에 대한 무권리 상태로 방치했던 것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식민정책의 시발이다. 바로 이 동시베리아 총독의 지시부터, 1862년에 체르카프스키 대위가 「법」의 내용을 조선인들에게 알려준 뒤 1864년까지 조선인들이 그 혜택을 기대하며 연해주로 월경했을 때와는 달리 조선인에 대한 이주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다.

1864년 11월에 월경조선인들에 대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제공된 혜택은 1861년의 「법」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동시베리아 총독의 승인 하에 연해주 군무지사의 판단을 통해 결정되어 1866년까지 제공되었다. 이것은 러시아 정부가 월경에 개입하여 조선인들을 유인하지 않았으며 다만 1861년의 「법」을 적용했을 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부정한다. 이미 조선인들이 처음으로 연해주로 이주한 이듬해부터 동시베리아 당국차원에서 「법」과

무관한 그리고 「법」과는 별도의 물질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 결정되었고, 1865년 1월부터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에게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개간자이자 경작자인 이들에게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본고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는 내용이다. 조선인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부여하지 않는 동시베리아 당국의 정책은 1893년 이전까지 일부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지속된다.

조선인을 러시아로 이주시키는 지원 계획과 별도로, 이미 러시아로 이주한 조선인의 러시아화와 연해주 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들을 '조러 국경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의 러시아인 사이로 재이주'시키는 정책이 1865년 1/4분기에 동시베리아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계획되었다. 이것은 러시아가 새로 획득한 영토에 대해 군사적 지배를 공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러시아농민을 그 배후지로 이주시켜 군량을 생산하고 해당지역을 러시아화하는 식민정책 중 하나의 연결고리로 기획되었다. 조선인 재이주정책은 조러 국경지대에 밀집해 있던 러시아령의 조선인이 조선과 지속적인 교류를 갖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조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내륙으로 재이주시켜 러시아화의 조건을 형성하는 한편, 이들을 러시아 군부대나 러시아 농민이 거주하는 마을 사이로 분산정착시켜 러시아인과의 접촉기회를 높임을 통해 조선인의 실질적인 러시아화를 도모하면서 전체 연해주지역을 골고루 개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와 같은 재이주정책은 수년간에 걸쳐 제반조건을 하나씩 마련해가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장기적 차원에서 수립된 계획이었다. 본고의 연구대상에 속하는 1865~1866년 간에는 조선인의 러시아화를 담당할 만한 러시아 군기지나 러시아인 마을이 블라디보스토크 향으로부터 나훔카만 사이의

지역 혹은 수이푼 분지에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본고에서 처음 밝힌 것과 같이 1865년 4월 동안 조선인들을 수찬지역으로 재이주시키라는 연해주 군무지사의 명령이 내려졌으나 시행되지 못한 이유에는 조선인의 러시아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이유와 함께 수찬 재이주가 강제성을 수반하므로 17세기말 이래로 러시아의 시베리아 식민정책의 원칙인 ‘자유의지에 의한 이주’와 충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866년 8월에는 1867년 1월 1일부터 수이푼 관구를 설립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1865년부터 다양하게 모색되어 오던 조선인 식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1865년 연해주 군무지사의 재이주계획과 수이푼 관구의 관할구역이 일치하고, 연해주 군무지사의 계획이나 겔메르센의 제안과 동일하게 러시아군 기지나 러시아인 마을이 세워진 지역으로 조선인을 재이주시키는 정책이 1868년에 시행되었으며, 조선인의 자치적 행정이 보장되었고, 자유의지에 의한 이주라는 원칙 또한 지켜졌다. 동시베리아 차원에서 조망한다면 러시아인에 대한 식민정책이 1861년의 우수리 지역에서 1866년의 남우수리 지역으로 우선적 정착지역을 변경하면서 점차 남쪽을 향했던 것과 반대로 조선인에 대한 식민정책은 북쪽과 내륙지역을 향하는 것이 대비된다.

본고를 통해 제기되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61년 이후 러시아 정부가 진행한 식민정책은 군사기지와 러시아인 마을의 건설을 통한 해당 지역의 러시아화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전개되었는데, 이 목표는 수이푼 관구 제정 이전의 카자케비치의 재이주계획이나 겔메르센의 보고서에서도 관철되었다. 그렇다면 이 양자와의 정책적 계승성이 확인되는 수이푼 관구가 제정된 이후에 진행된 조선인 재이주정책이 이 러시아 식민정책의 목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러시아의 시베리아 식민정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조선인에 대해 1861년 「법」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 조선인들은 자신이 개간하여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러시아 정부가 표방하던 법적 권리에 대한 보장과도 괴리되므로, 수이푼 관구의 제정 이후에 러시아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접근했던 방식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셋째, 1865년의 강제적 수찬 재이주 정책과는 달리 수이푼 관구 제정 이후에 러시아 정부가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방식을 통해 조선인을 설득하여 그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재이주지역으로 이주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1865년부터의 조선인에 대한 식민정책은 이주정책과 재이주정책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했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여러 계획과 제안이 통합되며 제정된 수이푼 관구의 식민정책에서 이주와 재이주 정책이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고종실록』.

『籌辦夷務始末』.

承文院(저), 배우성 외 4인(역), 『國譯 同文彙考 犯越史料4』.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2.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저), 한희정(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X XII - 러시아국립 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ДВ)』. 서울: 선인, 2014.

유진률, 「개탄론」. 『독립신문』, 광무 2년 10월 15일.

R. D. 차크스, 『러시아史』. 서울: 역민사, 1991.

Буссе, Ф. Ф., Переселение крестьян морем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в 1883-1893 годах.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Общественная Польза, 1896.

Вагин, В. И., “Корейцы на Амуръ.” Сборникъ историко-статистическихъ свѣдѣний о Сибкри и сопредѣльных ей странахъ, Т. 1. Спб: Русская скоропечатня, 1875.

Труды Приамурскаго отдѣла Императорскаго русска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аго общества. 1895 г.. Хабаровскъ: Типография Штаба войск, 1896.

Насекин, Н. А., “Корейцы Приамурскаго края: Крат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Журнал Министерств а народнаго просвещения. Часть ССCLII, №3, 1904.

Труды Приамурскаго отдела ИРГО, Вып.1, Т.11, Хабаровск: Сенатскя Типография, 1904.

2. 단행본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러시아와 한국』.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재러한인 이주사』. 서울: 시대정신, 2004.

보리쓰 박, 『러시아 제국의 한인들(극동기)』. 청주: 청주대학교 출판부, 2002.

이철, 『시베리아 개발사』. 서울: 민음사, 1990.

Осипов, Ю. Н., Крестьяне-старожил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1855—1917 гг. Монография. Владивосток: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ательство ВГУЭС, 2006.
Great Britain Naval Intelligence Division, A handbook of Siberia and Arctic Russia. Volume 1. London: His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20.

3. 논문

- 권희영, 「한민족의 노령이주사 연구(1863-1917)」. 『국사관논총』 제41집, 1993, 157~191쪽.
- 박노자, 「19世紀後半 韓人の 露領 移民의 初期 段階」. 『진주사학』 제6권, 1998, 167~176쪽.
- 박상철, 「러시아 정부와 시베리아 농민이주: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서양사연구』 제50집, 2013, 167~204쪽.
-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한인마을 연추의 형성과 초기 모습」. 『동북아역사논총』 제25호, 2009, 39~73쪽.
- _____, 「러시아원동지역 초기 한인마을 형성과 러시아의 정책에 대한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제40집, 2011, 281~340쪽.
-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저), 구양근(역), 「블라디보스토크 건문잡기(烏刺細底斯杜 屈見聞雜誌)」. 『한일관계사연구』 제9집, 1998, 212~283쪽.
- 썸비르썰바 따찌아나, 「19세기 후반 조·러간 국교수립과정과 그 성격: 러시아의 조선침략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_____, 「1869~1870년간에 진행된 러시아와 조선간의 경협상과 그 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2권, 2002, 7~24쪽.
- 양승조,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의 극동 지역 식민정책: 유즈노우수리 지역 식민이주 정책을 중심으로」. 『사총』 제87호, 2016, 277~316쪽.
- 이병조, 「러시아 프리아무르 한인사회와 정교회 선교활동(1865-1916)」.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상근, 「韓人 露領移住史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이채문,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역사와 이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9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1999, 349~384쪽.
- _____,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이주와 만주이주의 비교 - 이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0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2000, 96~105쪽.

최성운, 「조선말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를 유인하는 소문과 월경에서 드러나는 조선인들의 사회적 연대 연구: 1864~1877년까지를 중심으로」. 『장서각』 제45집, 2021, 384~433쪽.

플로트니코바 마리나, 「1863~1910년까지 연해주로의 한인 이주와 그들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 : 러시아 국립 역사기록보관소 극동지부 소장 문서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Байтуевич, З. Р., “Колонизационно-переселен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ека: политическ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кандидат наук, 2019.

Барбенко, Я. А., “Крестьянское расселение в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часть рус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Приамурья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2010, С. 82-98.

Редчун, В. М., “К Вопросу Об Особенности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ека: Правовой Аспект.” Культура И Наук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 22, № 2, 2017.

Зуева, Н. С., “Переселен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период столыпинских реформ.” кандидат наук, 2016.

Бендяк, Е. Э., КАК ЗАСЕЛЯЛАСЬ ПОБЕРЕЖЬЕ БУХТЫ НАХОДКА <http://nakhodka-lib.ru/%D0%BA%D0%B0%D0%BA-%D0%B7%D0%B0%D1%81%D0%B5%D0%BB%D1%8F%D0%BB%D0%BE%D1%81%D1%8C-%D0%BF%D0%BE%D0%B1%D0%B5%D1%80%D0%B5%D0%B6%D1%8C%D0%B5-%D0%B1%D1%83%D1%85%D1%82%D1%8B-%D0%BD%D0%B0%D1%85%D0%BE%D0%B4/>, 검색일: 2022년 3월 12일.

От Або до Ясной Поляны по карт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Часть 1 <http://toponimika.ru/index.php?id=157>, 검색일: 2022년 3월 11일.

국문초록

러시아 정부는 1863년에 처음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노동력이 연해주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1864년 11월부터 동시베리아 당국 차원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식량제공을 결정했고, 1865년에는 이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착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유인하는 첫 이주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또한 연해주로 넘어온 조선인들이 조선과 연계해 연해주 내의 적대적 정치세력으로 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조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러시아인들 사이로 분산이주시켜 러시아화 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연해주 전지역을 개발하는 재이주정책을 계획한다. 1865년 1/4분기부터 구체적인 조선인 재이주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1866년에 8월에 조선인을 이주 및 재이주시켜 연해주개발과 조선인에 대한 러시아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이푼 관구 제정 명령이 내려지는 것으로 귀결된다.

투고일 2021. 12. 23.

심사일 2022. 4. 9.

게재 확정일 2022. 5. 3.

주제어(keyword) 러시아의 식민정책(Russian Colonial Policy), 조선인(Korean), 이주(Immigration), 재이주(Resettlement), 수이푼 관구(Suifun District)

Abstract

A Study on the Making of Russian Colonization Policy for the Korean People from 1863 to 1866

Choi, Sung-Woon

The Russian government realized that Korean's labor power, who immigrated in 1863, could be very useful to develop recently possessed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The authority of Eastern Siberia decided to offer food for the Koreans in November of 1864. Then the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first colonial policy focused on enticing Koreans by providing the goods necessary for settlement without admitting the land ownership in 1865.

The objective of the colonial policy was to Russianize Koreans and develop the entir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The Russian government was concerned that Korean immigrants residing in the Korean-Russian border area might turn into an antagonistic political and national group to Russia, associating with Joseon Government. So they wanted to disperse the Korean population of the Korean-Russian border area to the remote inland among Russian population and to Russianize them.

The first actual schemes were planned in the first quarter of 1865, which would migrate Koreans to Russian territory and resettle them to the remote inland regions far from the Korean-Russian border area. Then Suifun province was ordered to be enacted in 1867 on the 13th of August in 1866, which aims to develop the entir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economically and to Russianize the Korean immigrants. The main policy of the Suifun province was immigration and resettlement of the Koreans.